

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2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5. 11(목)

발 의 자 : 장문혁 의원

찬 성 자 : 박찬원, 함명섭,
박종욱, 이범연,
임영순 의원

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」 제2조에 따라 중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7년 5월 15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『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』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심 사 제 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

3. 활동기간

-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박찬원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,
이범연 의원, 임영순 의원

5. 운영계획

일시	차 수	내 용	비고
2017. 5.15 (월)	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특별 위원회 (13:30)	1.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	